

# 컴퓨터범죄와 전자적기록물의 법적성격

—서독·일본 및 최근 우리나라의 입법동향—

사회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혁을 가져오고 있는 정보화의 물결은 전통적인 법체계의 대폭적인 수정·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본지는 외국의 법제동향과

우리나라의 입법상 대응 또는 고려할 문제를

연재, 정보화사회로 가는 지름길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註

## 전자적기록물의 특성

‘전자적기록물’이라 함은 전자적방식, 자기적방식, 기타 사람의 지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기록방식으로서 컴퓨터시스템의 정보처리에 이용되는 정보 기록매체를 의미한다.

예컨대,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광디스크, 자기드럼 등은 대표적인 기록매체로서 이들 속에는 다양한 내용의 기록들을 내장시킬 수 있다.

전자적기록물은 컴퓨터문명의 발달과 정보화사회 구축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이에 관한 법적 성격의 논의가 컴퓨터 개발 초기단계 부터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

지난번에 컴퓨터범죄 처벌에 관하여 영국의 새로운 입법을 소개한 바(본지 '91년 7월

호) 있거니와 컴퓨터범죄 처벌과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중의 하나가 전자적기록물에 대한 법적성격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라 하겠다.

전통적인 문서의 개념은 기호·문자·그림등 눈으로 볼 수 있고(가시성), 읽을 수 있는(가독성), 유형물로서 비교적 영속적(영속성)으로 기록된 것을 의미해 왔다.

이에 반해 디스크나 자기테이프등 기록매체들은 종래의 문서 개념과는 커다란 상이점을 갖고 있다. 때문에 입력된 기록들이 출력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록매체 그 자체로는 문서로 보기가 곤란하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형법학자들 중 보수파는 전자적기록물이 눈으로 식

별할 수 없는 ‘+’ ‘-’의 자성체에 불과하며, 볼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으며, 영속성도 없기 때문에 문서요건에 하나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펴왔다.

또한 일반문서(수작업 문서)의 경우는 작성자의 필체, 종이, 작성형식등이 각각 특성을 지니고 있고, 작성자나 명의인의 인증방법이 간단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전자적기록물은 누가 작성하여도 거의 동일하며, 다만 인증방법으로 암호나 전자서명등을 쓸 수 있지만 이 역시 일반인이 인식하는 데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컴퓨터범죄를 처벌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전자적기록물의 문서성 인정”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만약 이를 법적으로 문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컴퓨터시스템에 내장된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파괴·변경 또는 부정유출 등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고, 금융기관의 디스크 등에 입력된 데이터를 교묘하게 조작하여 수천 또는 수억대의 돈

을 사기·절취한다 해도 처벌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또한 전자적기록물이 공문서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면 행정의 사무자동화는 기대할 수 없으며, 또 회계서류가 세법·상법상 장부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기업등의 사무자동화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번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서독과 일본의 입법동향을 살펴보고, 아울러 최근 우리나라의 새로운 입법사례를 소개해 보기로 한다.

## 외국의 입법사례

서독에서는 1987년 3월에 컴퓨터범죄 방지를 위하여 형법을 크게 개정하였다.

형법개정 당시 학자들 간에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부분은 역시 전자적기록물의 문서성 인정 문제였다.

즉, 전자적기록물의 작성방법과 형태등의 특성상 작성명의인을 기록물 자체에서 인식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고, 변조·훼손·말소행위등의 증거를 유형으로 포착하거나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곤란하다는 지적이었다.(일반문서의 경우 정정·변조·말소행위를 눈으로 식별이 가능하다)

결국 서독은 전자적기록물에 대한 문서성의 인정이 없이

는 컴퓨터범죄를 처벌할 수 없다는 데 모두의 인식을 같이 하고, 전자적기록물에 한하여 서만 명의인의 요건을 거의 무시하고, 권한없이 컴퓨터시스템에 의한 기록의 작성과 변조, 말소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형법에 새로운 조문을 추가하였다.

새로운 조문은 “법률상의 거래에 있어서 사람을 기만하기 위하여 증거로 되어 있는 데이터(전자적기록물)를 허위 또는 변조된 문서로 작성·축적하거나 이를 행사한 자를 처벌한다”(서독형법 제269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써 전자적기록물의 문서성 여부 문제는 논란을 끝맺게 되었다.

일본의 경우도 1987년 6월 형법을 크게 개정하여 컴퓨터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하였다.

당시 일본은 형법개정 과정에서 전자적기록물에 대한 훼손·말소·변조 행위들이 형법상 문서범죄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많았으나 이미 1983년의 최고재판소 판례에서 문서성을 인정하였고, 서독 등 외국의 입법례와 기타 학계의 통설을 받아들여 문서범죄로 처벌하도록 형법을 개정하였다.

일본형법 제161조의 2를 보면, 제1항에서 사람의 사무처리를 그릇되게 할 목적으로 그 사무처리에 사용으로 제공되

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을 부정으로 작출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엔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의하여 작성되는 전자적기록을 부정으로 작출하였을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엔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범규를 더욱 강화하였다.

위와 같은 입법례는 미국의 연방형법 및 각 주의 형법에서도 비슷하게 규정하고 있다.

컴퓨터시스템에 접근하여 전자적기록물을 변조·파괴·부정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앞에서 지적한대로 컴퓨터범죄 발생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각국은 보호가 더욱 필요한 부분에 대해 별도의 범규를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 우리나라의 입법사례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전자적기록물의 문서성에 관한 규정이 「정부공문서규정」(1984. 11. 23, 대통령령 제11,547호)에 명백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았던 관계로 전자적기록물을 공문서로 보아야 하느냐의 문제가 많이 제기되어 왔다.

즉 정부공문서규정 제3조(용어정의)에서는 “공문서라 함은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

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사진·테이프·필름 및 슬라이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디스크, 자기테이프 등은 문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사회에서 행정의 능률화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번에 새로 전문개정된 「사무관리규정」(91. 6. 19 대통령령 3,390호)에서는 전자적기록물을 구체적으로 예시·열거하여 이러한 논란의 소지를 없앴다.

새로 제정된 사무관리규정 제3조를 보면 “공문서라 함은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 및 슬라이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디스크”가 새로 추가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 시행하는 전자적기록물(디스크·테이프 등)에 법적성격을 부여한 것으로 정보화사회를 위한 전진적이고도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전자적기록물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최초로 법적성격을 규정한 입법사례는 컴퓨터로 자동차등록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을 1989년 12월31일 개정할 때

관련조문을 보완하면서 부터였다.

이는 동법 제6조 4항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할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화일은 자동차등록원부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전자적기록물(등록화일)을 자동차등록원부, 즉 ‘공정증서원본’으로 대체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입법례가 되었다.

공정증서원본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로서 권리·의무에 관한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가지는데, 법적으로 문서성이 강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이 공정증서원본, 즉 전자적기록물인 자동차등록화일을 불실기재하거나 훼손·변조하였을 때에는 현행 형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형법 제228조;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

또한 가장 최근의 입법례로는 주민등록을 전산처리함에 따라 주민등록법을 개정·보완

(91. 1. 14)한 것인데,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표색인부에 기재할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주민등록표화일(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은 주민등록표 또는 주민등록색인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역시 전자적기록물에 대해 종전의 주민등록표와 동일하게 법적성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훼손·변조하였을 때에도 물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 밖의 각 단행법에서의 입법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상의 입법례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전자적기록물에 대하여 법적으로 문서성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대하여도 상당한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정보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장치는 그런대로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호에는 “전자적기록물의 인증방법(전자서명)과 송달”에 관해서]

### 〈전자적기록물 입법례〉

법령명	주요내용	비고
지적법 (90. 12. 31) 제8조의 2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그 등록화일은 지적공부로 봄	
관세법 (90. 12. 31) 제242조의 6	• 전산처리설비에 갖추어진 화일에 등록된 때에는 세관에 접수되거나 세관에서 발송한 것으로 봄	전산처리에 의한 문서 송달
소득세법시행령 (87. 5. 8) 제220조	• 보조부와 보조원장을 전자계산기 체제에 의하여 기록한 테이프 및 디스크는 세법에 의하여 규정한 장부로 봄	세법상 장부인정